변경대비표(일반 및 자펀드)

1. 대상 펀드:

no	펀드명	클래스 신설	운용역 변경	투자 대상 자산	모펀드 투자 대상자산	환매 수수료	세제 혜택 연장	결산	변동성	변경 사항
1	미래에셋미국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0	-	-	-	-	-	-	-	12)
2	미래에셋드림타겟증권투자회사(주식)	-	0	0	-	-	-	-	-	12)
3	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회사(주식)	-	-	0	-	-	-	-	-	12)
4	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자투자회사(채권혼합)	-	1	0	1	1	-	-	-	12)
5	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채권)	-	-	0	-	-	-	-	-	12)
6	미래에셋솔로몬중장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1호(채 권)	1	-	0	-	-	-	-	-	12)
7	미래에셋엄브렐러증권투자신탁(채권)	-	-	0	-	0	-	-	-	10), 11), 12)
8	미래에셋연금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0	-	-	-	-	-	12)
9	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(주식)	-	-	0	-	-	-	-	-	12)
10	미래에셋퇴직플랜BRICs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 탁1호(채권혼합)	-	-	-	0	ı	-	-	-	12)
11	미래에셋퇴직플랜동유럽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 탁1호(채권혼합)	1	1	1	0	1	-	-	-	12)
12	미래에셋퇴직플랜친디아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 탁1호(채권혼합)	-	1	-	0	1	-	-	-	12)
13	미래에셋G2이노베이터증권자투자신탁(주식)	-	-	-	-	-	-	-	0	12)
14	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자 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-	-	-	-	0	0	12)
15	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-	-	-	-	-	-	0	0	12)
16	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 탁1호(채권혼합)	-	-	-	-	-	-	0	0	12)
17	미래에셋개인연금소비성장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호(주식)	-	-	-	-	-	-	0	0	12)
18	미래에셋개인연금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 신탁1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	-	-	-	-	-	-	0	0	12)
19	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-	1	-	-	1	-	0	0	9), 12)
20	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4호(주식)	-	-	-	-	0	-	0	0	9), 10), 11), 12)
21	미래에셋로저스농산물지수특별자산자투자신탁(일 반상품-파생형)	1	-	-	-	-	-	0	0	12)
22	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3호(주식)	-	-	-	-	-	-	0	0	12)

23	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11호	-	-	-	-	-	0	0	-	12)
24	미래에셋변액보험채권증권투자신탁(채권)	-	-	-	-	-	-	-	-	12)
25	미래에셋소비성장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)	-	-	-	-	-	-	0	0	12)
26	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Q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-	-	-	-	0	-	0	0	12)
27	미래에셋인도중소형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(주 식)	-	-	-	-	-	-	0	0	9), 12)
28	미래에셋인디아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-	-	-	-	-	0	0	9), 10), 12)
29	미래에셋차이나과창판증권투자신탁(주식)	-	-	-	-	-	-	0	-	12)
30	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호(H)(주식)	-	-	-	-	-	-	0	0	9), 10), 12)
31	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호(UH)(주식)	-	-	-	-	-	-	0	0	9), 12)
32	미래에셋퇴직연금가치주포커스40증권자투자신탁 1호(채권혼합)	-	-	-	-	-	-	0	0	9), 12)
33	미래에셋퇴직연금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호(주 식)	-	-	-	-	-	-	0	0	12)
34	미래에셋퇴직플랜2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-	-	-	-	0	0	9), 12)
35	미래에셋퇴직플랜G2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 합)	-	-	-	-	-	-	0	0	12)
36	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20증권자 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-	-	-	-	0	0	12)
37	7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		-	-	-	-	-	-	0	10), 12)
38	미래에셋헤지펀드셀렉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(사모 투자재간접형)	-	-	-	-	0	-	0	0	9), 12)

2. 변경 사항:

- 1) 클래스 신설
- 2) 운용역 변경
- 3) 투자대상자산 추가
- 4)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추가
- 5) 환매수수료 삭제
- 6) 세제 혜택 연장 관련 변경
- 7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8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- 9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문구 변경
- 10) 법 개정사항 반영
- 11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12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3. 효력발생예정일: <u>2022년 12월 16일 (금)</u>

4. 변경 내용:

1) 클래스 신설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
종류 및 명칭 등)	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	<신설>	[아래참조1]
제10조(수익증권의 발	<신설>	[아래 참조 1]
행 및 전자등록)		1
제37조(보수)	<신설>	[아래 참조 1]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요약정보	<신설>	[아래 참조 1]
환매수수료		
제1부. 1. 집합투자기구		
의 명칭		
제2부. 1. 집합투자기구		
의 명칭		
제2부. 2. 집합투자기구	<신설>	[2022.12.16] [아래 참조 1]
의 연혁	_ 	<u></u>
6. 집합투자기구의 구		
조		
[종류형 구조]		
11. 매입, 환매 및 기준		
가격 적용		
13. 보수 및 수수료에	<신설>	[아래 참조 1]
관한 사항		
가. 투자자에게 직접		
부과되는 수수료		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		
과되는 보수 및 비용		

[참조 1] 가입자격

구분	가입자격

-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종류 F

- 판매회사의 일임· 자문 계좌(랩어카운트, Wrap Account)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

- 법 시행령 제 103 조에 따른 금전신탁

펀드명	신설 클래스	판매보수(%)	선취 판매 수수료	환매 수수료
미래에셋미국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<u>종류 F</u>	1 1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

2) 운용역 변경

- 미래에셋드림타겟증권투자회사(주식)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운용전문인력>	<u>정원택</u>	정원택(책임), 송재원(부책임)

3) 투자대상자산 추가

[집합투자규약]

-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채권)
- 미래에셋솔로몬중장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
- 미래에셋엄브렐러증권투자신탁(채권)
- 미래에셋연금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15 조(투자대상자산	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	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
등)	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	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
	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	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
	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	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
	1. ~2. <생략>	있다.
	3. <신설>	1. ~2. <생략>
		3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
		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
		<u>말한다.)</u>

[정관]

-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회사(주식)
- 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자투자회사(채권혼합)
- 미래에셋드림타겟증권투자회사(주식)
-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(주식)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51 조(투자대상 등)	②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는 환매	②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는 환매
	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	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
	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	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
	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	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
	1. ~3. <생략>	1. ~3. <생략>
	4. <신설>	4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
		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
		말한다.)

-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채권)
- 미래에셋솔로몬중장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
- 미래에셋엄브렐러증권투자신탁(채권)
- 미래에셋연금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8. 가. (1)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
투자대상	<신설>]	<u>환매조건부매수</u>]
	<생략>	<생략>
	<신설>	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
		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
		것을 말함.

-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회사(주식)
- 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자투자회사(채권혼합)
- 미래에셋드림타겟증권투자회사(주식)
-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(주식)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8. 가. (1)	[단기대출/금융기관 예치/양도성정기예금	[단기대출/금융기관 예치/양도성정기예
투자대상	정서, <신설>]	금증서, 환매조건부매수]
	<생략>	<생략>
	<신설>	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
		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
		것을 말함.

4)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추가

미래에셋코리아장기증권모투자신탁(채권)			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			
[제2부 별첨1] 모집합투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u><</u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환			
자기구에 관한 사항 1.	<u>신설>]</u>	매조건부매수]			
나. (1) 투자대상	<생략>	<생략>			
	<신설>	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			
		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			
		<u>말함.</u>			

5) 환매수수료 삭제

-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4호(주식)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9조 (환매수수료)	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	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
	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	<u>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u>
	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	
	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	
	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	
	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	
	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	
	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	
	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	
	한다 <u>.</u>	
	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	
	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	
	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	
	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	
	이 부과한다.	
	 1. 종류A 수익증권	
	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	
	30일 이상 90일 미만: 이익금의 30%	
	2. 종류A-e 수익증권	
	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	
	30일 이상 90일 미만: 이익금의 30%	
	3. 종류AG 수익증권	
	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	
	30일 이상 90일 미만: 이익금의 30%	
	4. 종류A-w 수익증권	
	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	
	30일 이상 90일 미만: 이익금의 30%	
	30E 10 30E 10. 170H 3070	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	[A, A-e, AG, A-w] 30 일 미만: 이익금의 70%	환매수수료 없음
	<u> 30 일 이상 90 일 미만: 이익금의 30%</u>	

- 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Q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9조 (환매수수료)	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	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
	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	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
	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	
	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	
	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	
	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	
	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	
	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	
	일의 익	
	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	
	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	
	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	
	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	
	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	
	<u>이 부과한다.</u>	
	<u>1. 종류A 수익증권</u>	
	30일미만:이익금의 70%	
	30일이상 90일미만:이익금의 30%	
	2. 종류A-e 수익증권	
	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	
	30일 이상 90일 미만: 이익금의 30%	
	3. 종류AG 수익증권	
	90일미만:이익금의70%	
	4. 종류C1 수익증권	
	90일미만:이익금의70%	
	<u>5. 종류C2 수익증권</u>	
	90일미만:이익금의70%	
	6. 종류C3 수익증권	
	90일미만:이익금의70%	
	7. 종류C4 수익증권	
	8. 종류C-e 수익증권	

90일미만:이익금의70%	
9. 종류C-I 수익증권	
90일미만:이익금의70%	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환매수수료>	[A] 30 일미만:이익금의 70% 30 일이상	환매수수료 없음
	90 일미만:이익금의 30%	
	[A-e] 30 일 미만: 이익금의 70% 30 일	
	이상 90 일 미만: 이익금의 30%	
	[AG, C1, C2, C3, C4, C-e, C-l]	
	90 일미만:이익금의 70%	

- 미래에셋엄브렐러증권투자신탁(채권)

항목	변경 저	변경 호
<u> </u>	변경 전	변경 후
제39조 (환매수수료)	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	
	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	<u>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u>
	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	
	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	
	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	
	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	
	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	
	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	
	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	
	<u>한다.</u>	
	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	
	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	
	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	
	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	
	이 부과한다.	
	<u>1. 종류A 수익증권</u>	
	해당사항없음	
	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	
	3. 종류C-I 수익증권	
	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	
	4. 종류A-I 수익증권	
	해당사항없음	
	③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	

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"수익	
증권통장거래약관"에 정한 바에 따라 목	
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	
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	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	[A, A-I] 없음 [C-A, C-I] 90 일 미만: 이익금의 70%	<u>환매수수료 없음</u>

- 미래에셋헤지펀드셀렉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(사모투자재간접형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41조(환매수수료)	①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	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
	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	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
	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	
	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	
	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	
	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	
	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	
	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	
	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	
	한다.	
	②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을 기준으로 다	
	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	
	1. 1년 미만 환매 시: 환매금액의 1.00%	
	2. 1년 경과일로부터 투자신탁 해지 이전	
	환매시: 해당사항 없음	
	③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	
	도 불구하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"수익	
	증권저축약관"에 정한바에 따라 목적식	
	저축 투자자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	
	를 면제할 수 있다.	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환매수수료>	[A, A-e, AG, C, C-a, C-I, C-P, C-Pe, C-	환매수수료 없음
	e, CG, F, S]	
	- 1 년 미만 환매 시: 환매금액의 1.0%	

- 1 년 경과 후 환매 시: 없음	

6) 세제 혜택 연장 관련 변경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14. 나. 과세 (4)	-가입기간	-가입기간
조세특례제한법상 공모부	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	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
동산집합투자기구에 관한	<u>까지</u>	<u>까지</u>
사항		

8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
퍼드며		변경 후	변경	변경
펀드명 	등급	등급	전(%)	후(%)
미래에셋 G2 이노베이터증권자투자신탁(주식)	2	<u>1</u>	23.62	25.32
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	4	7.39	<u>8.06</u>
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3	3	<u>13.14</u>	<u>13.7</u>
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<u>4</u>	<u>3</u>	<u>9.47</u>	<u>10.07</u>
미래에셋개인연금펀드솔루션 40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	4	4	<u>7.55</u>	<u>8.08</u>
미래에셋개인연금소비성장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1	<u>2</u>	<u>26.3</u>	<u>24.69</u>
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2	2	<u>21.65</u>	<u>21.03</u>
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 4 호(주식)	2	2	<u>23.78</u>	<u>23.61</u>
미래에셋로저스농산물지수특별자산자투자신탁(일반상품-파생형)	<u>3</u>	<u>2</u>	<u>14.1</u>	<u>16.09</u>
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 3 호(주식)	2	2	<u>23.5</u>	<u>22.27</u>
미래에셋소비성장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<u>1</u>	<u>2</u>	<u>26.2</u>	<u>24.79</u>
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 Q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<u>3</u>	<u>2</u>	<u>14.15</u>	<u>15.02</u>
미래에셋인도중소형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2	2	22.66	<u>22.79</u>
미래에셋인디아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2	2	<u>21.59</u>	<u>22.2</u>
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 2 호(H)(주식)	2	2	<u>21.89</u>	<u>18.91</u>
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 2 호(UH)(주식)	2	2	20.27	<u>18.06</u>
미래에셋퇴직연금가치주포커스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<u>3</u>	<u>4</u>	10.28	<u>9.61</u>
미래에셋퇴직연금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 1 호(주식)	1	<u>2</u>	26.33	<u>24.74</u>
미래에셋퇴직플랜 2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5_	4	<u>4.5</u>	<u>5.19</u>
미래에셋퇴직플랜 G2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<u>5</u>	<u>4</u>	<u>4.13</u>	<u>5.05</u>
미래에셋퇴직플랜 KRX100 인덱스안정형 20 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<u>5</u>	<u>4</u>	<u>4.62</u>	<u>5.3</u>
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 1 호(채권)	<u>5</u>	<u>4</u>	<u>3.67</u>	<u>5.59</u>
미래에셋헤지펀드셀렉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(사모투자재간접형)	5	5	2.85	<u>2.93</u>

9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문구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
제2부. 12. 나.	①상장주식	①상장주식
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	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	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
법 (1) 평가방법	시가	시가 <u>(해외상장 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</u>
		<u>가)</u>
	③장내파생상품	③장내파생상품
	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	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
	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	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<u>(해외 장내파생상품</u>
		의 경우 전날의 가격)
	⑦집합투자증권	⑦집합투자증권
	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	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(외국집합
	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. 다만,	투자증권은 평기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
	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	된 기준가격) 다만, 상장된 집합투자증권
	래된 최종시가	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<u>(해외상</u>
		장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)

10) 법 개정사항 반영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3조(자산운용지시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
등)	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	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
	처분 등을 한 경우 투자신탁재산으로 그	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
	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	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
	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	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
	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	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	그러하지 아니하다.	
제15조(투자대상자산	-채권	<삭제>
등)	<중략>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	
	<생략>	
	-자산유동화증권	
	<중략>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	
	<생략>	
제17조(운용 및 투자 제	2. <생략>	2. <생략>
한)	나. <중략>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	나. <u><삭제></u>
	<u>또는</u>	
	<중략>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	
	<u>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</u> , <생략>	

제42조(집합투자업자 및	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	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
신탁업자의 변경)	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	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
	를 거쳐야 한다.	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
		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
		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
	②~③ <생략>	②~③ <생략>
	<신설>	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
		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
		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
		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
		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
		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
		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
		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
		<u>수 있다.</u>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8. 가. 투자대상	-채권	<삭제>
	<중략>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	
	<생략>	
	-자산유동화증권	
	<중략>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	
	<생략>	
제2부 8. 나. 투자제한	-동일종목투자 (예외)	-동일종목투자 (예외)
	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	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
	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	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
	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	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
	나. <중략>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	나. <u><삭제></u>
	<u>또는</u>	
	<중략> <mark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</mark>	
	<u>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</u> , <생략>	

11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늣 ㅁ	버거 및	버거 농
양프	변경 신	년경 으
0 7		

제2조(용어의 정의)	<신설>	- "고난도금융투자상품"이라 함은 법 시행 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 한다.
제53조(고난도금융투자 상품)	<신설>	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.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부. 2. 집합투자기구	<신설>	바.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: 해당사
의 종류 및 형태		<u>항 없음</u>

12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4부. 1. 가.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
회사의 개요	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	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
	- 일반사무관리회사 :	<삭제>
	<u>미래에셋펀드서비스</u>	
	- 신탁업자 : 국민은행	
제4부. 4.	회사명: 미래에셋펀드서비스㈜	회사명: 한국펀드파트너스 ㈜
일반사무관리회사에		
관한 사항		

^{*}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규약 및 정관 조항 번호는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, 변경 내용은 동일함

미래에셋자산운용㈜

[별첨] 담당 투자운용인력의 경력 및 운용성과

- 1. 경력
 - 1) 성명: 송재원 매니저
 - 2) 주요경력
 - (15년~18년) KB증권 리서치센터
 - (18년~22년) KTB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
 - (22년~현재) 미래에셋자산운용
- 2. 운용현황(2022.11.30. 현재, 설정액 기준 상위 10개 공모 펀드 나열)

해당사항 없음

3. 운용성과(2022.11.30. 현재, 설정액 기준 상위 10개 공모 펀드 나열, 기간별 수익률, %)

해당사항 없음